#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753 제출연월일: 2024. 7. 15.

부

제 출 자:정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,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,

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(漏泄)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 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 완하려는 것임.

#### 법률 제 호

#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제1항 중 "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"을 "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제6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3호) 중 "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"을 "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1월말"을 "2월 말일"로 한다.

- 3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 사 및 의견 제출자 보호 조치
- 4. 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
- 5.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

제22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1항 및 제12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항,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전단 중 "제2항"을 "제6항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항제1호

및 제2호"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"업무기관의 장은 권고"를 "개선 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 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고, 해당 권고"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"제6항"을 "제7항"으로 한다.

-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(漏泄)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
제23조제1항 전단 중 "제22조제2항"을 "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"로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"를 "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17조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중 "행정기관"을 "업무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기관"을 "업무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행정기관"을 "업무기관"으로, "경우에는"을 "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규제개선"을 "규제개선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"로, "담당공무원"을 "담당공무원 및 임직원"으로 한다.

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 혂 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 제22조(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 치)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치) ① -----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규제를 정비하고 중소기업 애로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 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 활력 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 을 제고하기 -----기업 옴부즈만을 둔다.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 하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3.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 른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, 조사 및 의견 제출자 보 호 조치 4. 제23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 <신 설> 감경 또는 면제의 건의 <신 설> 5.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 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와 그 결과의 공표 3.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 <u>6</u>. ----- <u>규제를 정비하고</u> 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함 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 으로써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으로 정하는 업무 ③ (생략)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 여 매년 <u>1월말</u>까지 규제개혁위 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 고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<신 설>

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<b>4</b>
2월 말일
⑤ (현행과 같음)
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
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
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
표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업무기
관의 장은 그 의견을 성실히 검
토하여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소기업
옴부즈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
여야 한다.
<u>⑦</u> <u>제6항</u>
에 따른 의견 표명 외에도 제2
항제1호 및 제2호
<u>개선 권고를 요</u>
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
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
는 이에 따라야 하고, 해당 권고

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<u>제6항</u>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,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. <신 설>

<신 설>

⑧・⑨ (생 략)

제23조(의견 제출 등) ① 중소기 제 업자·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 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「행정 구제기본법」 제17조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44조를 준용한다.

<u> </u>
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
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받
은 자료나 업무상 알게 된 비밀
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
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
(漏泄)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⑪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를
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하고, 정
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.
<u>①</u> · <u>②</u> (현행 제8항 및 제9항과
같음)
]23조(의견 제출 등) ①
<u>제22</u> 조제2항제1호 및
<u> </u>
「행정
규제기본법」 제17조

-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<u>행정기관</u>은 규제 개선 등에 관 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 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④ 적극적인 <u>규제개선</u>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<u>담당공무원</u>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음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.

제24조(행정지원 등) ①·② (생 로 략)

<신 설>

(2)
업무기관
,
③
업무기관
경우에는 사
실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무
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
<u> 나</u>
④ <u>규제개선 및 중소</u>
기업 애로사항 해결
담당공무
원 및 임직원
<u>.</u>
세24조(행정지원 등) ①・② (현
행과 같음)
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2조
제2항제5호에 따른 평가 결과가

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# 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・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24조제3항 (행정지원 등)	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기관(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)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# 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	
1	안 제24조제3항 (행정지원 등)	제1호: 예상 비용이 연평균 10억원 미만	

#### 2. 상세 사유

- 연평균 약 90백만원 소요 예상 : (6개 기관×10백만원) + (6개 기관× 5백만원)
  - 평가대상 기관 수(잠정) : 총 431개 기관
    - 중소기업 유관성 높은 중앙행정기관 26개, 지방자치단체 243개(광역 17개, 기초 226개), 주요 공공기관 162개(공기업 32개, 준정부기관 55개, 기타공공기관 75개)
  - 포상금이 지급되는 기관 수 및 지급액
    - 평가대상 기관을 6개 유형으로 구분, 각 유형별로 최우수(1) 및 우수(1)기관 선정
    - 최우수 기관에는 기관 당 10백만원, 우수 기관에는 기관 당 5백만원 포상금 지급

## Ⅲ. 부대의견

O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입법과정에서 마련할 예정이고, 포상금의 규모는 특성상 명확히 비용을 추계하기가 곤란하며, 추후 포상금 지급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고금관리법, 세출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

#### ※참고사항

동 법률안 제22조제2항제5호의 '규제의 정비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'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관련 현행 예산에서 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재정수 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

## Ⅳ. 작성자

#### O 성명

주무관	사무관	과장(책임전문위원)	실장•국장
-	김창호	박재현	김희순

#### 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창호	044-204-7171	chowal@korea.kr